

2026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 세부과제 :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 사업규모 : 20개사 지원, 총 300백만원(경기도)
-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사업목적 : 도내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및 수출 증진 도모
- 지원내용 : 화장품·뷰티 제품 디자인(용기·부자재), 포장·패키지 디자인, 브랜드(BI·CI) 개발 등 디자인 개발 직접비 및 사업화 지원(컨설팅·해외 플랫폼 입점·활용)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중소기업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중 1개 이상 必)

* 화장품법 제2조 2항 참조

□ 지원 제외기업

- 뷰티 제품·기술개발과제 관리지침(2026.03.) 6조 가)항(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해당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 기업, 국제·지방세 체납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기업
 -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서면/대면 평가위원회 등)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com, ☎02-2071-1504~8)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단체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지원 세부내용

□ 지원내용: 뷰티·화장품 관련 디자인 개발 직접비

- 제품디자인(화장품 용기·부자재 구조 설계 등), 포장·패키지디자인(단상자·포장재·라벨 등), 브랜드(CI/BI) 개발 등 ***디자인 전문기업(외부용역) 활용 디자인개발비**
 - * 홈페이지, 브로슈어, 리플렛 등 마케팅콘텐츠는 지원항목이 아님
 - * 디자인 전문기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designfirm.kidp.or.kr)에 등록된 외부기업으로 한정하며, 신청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디자인 개발 제품 목업(디자인·워킹) 등 본 사업으로 진행한 **디자인 개발 결과물 확인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최소 수량 기준)**
 - * 기업부담금에 한해 시금형비 또는 QDM(Quick Delivery Mold) 편성 가능
 - * 양산 목적의 시제품 제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화 추가지원*

- 1) **전문가 컨설팅:** 경영·마케팅·특허·인증 분야 전문가 매칭 컨설팅(희망기업 대상, 최대 3회)
- 2)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활용:** 전문가 교육 및 직접비 지원(10개사, 최대 250만원)
 - * 사업기간 내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참여기업(20개사) 중 일부를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며, 최종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규모: 총 20개사, 1개사 최대 10,000천원 * 지원금의 20% 기업자부담(현금) 필수

선정등급	선정기업 수	지원금 (등급별 최대금액)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총 사업비 (지원금+기업부담금)
A	5개사	10,000천원	2,000천원	12,000천원
B	10개사	9,000천원	1,800천원	10,800천원
C	5개사	8,000천원	1,600천원	9,600천원

- 신청기업은 선정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하며, 선정 이후 등급 기준에 따른 예산 조정이 불가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 별도부담
- ‘미국 관세 피해기업’의 경우 자부담금 5% 감면 적용(기존 20%→15%)되며, 감면분 5%는 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함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2026년 5월 말 예정) ~ 2026년 11월(7개월 이내)

□ 추진일정(안) * 변동 가능

사업공고 및 접수	참여기업 선정평가		선정기업 협약체결	디자인개발 과제 수행	중간점검 (현장)	참여기업 결과보고	최종평가
	1차 서면	2차 대면					
공고일 ~ 4.17	~4.30	~5.15	5월 말	6~11월	8~9월	12월 초	12월

4 선발방법

□ 선발내용 :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수행기업 20개사

□ 선발방법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신청자격 요건 검토

- 기업 및 공장 소재지, 지원 제외사항, 사업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등 적격 검토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사항 검토
 -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점수에서 20% 감점 적용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법위반기업 제한’ (4개 분야 11개 법률)
 (공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납세) 국제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별첨] 2026-8(2026.1.8.),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 1차 서면심사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평가내용 :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 사업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등 정성·정량항목 서면평가 *평가기준 불임 참조
- 선발기준 : 서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선발(30개사 내외)

○ 2차 대면심사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평가내용 : 디자인개발 필요성, 개발계획 적정성, 예산 적정성 등 인터뷰 심사
- 평가방법 : 기업별 사업계획서 기반 질의응답 10분 내외(PT발표 없음)

- 선발기준 : 대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최종 선발(20개사, 예비5개사)
- * '관세 피해기업'은 기준점수(60점) 충족 시 전체 선정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외부 심의위원회의 조정 의견 및 지원금 결정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업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협약 체결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평가의견 등 조정이 어려울 경우 차순위 예비기업 선정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년 4월 17일(금) 17시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jeb@gsmba.kr)
- 공고장소: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www.gsmba.kr),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제출서류: 총 3개
 - 1) 신청서류일체 - 구비서류(①~⑮) 통합본(PDF) * 파일명: 신청서류일체_기업명.pdf
 -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한글) * 파일명: 사업계획서_기업명.hwp
 - 3) 신청기업 정보(엑셀) * 파일명: 신청기업정보_기업명.xls

제출서류(파일형식)	구비서류 목록	제출구분
1) 신청서류일체 (PDF 파일) 순서대로 병합한 통합본 1개파일	①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② [서식2] 법위반 사실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③ [서식3]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필수
	④ [서식4]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필수
	⑤ [서식5]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수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⑦ 식약처 등록 화장품기업 증빙서류: 1종 이상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필수
	⑧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⑨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	필수
	⑩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	필수
	⑪ 최근 2개년도(2024~2025) 결산재무제표	필수
	⑫ 공장등록증명원	선택(해당시)
	⑬ 가점 증빙서류(기업인증서류 등) *가점목록 붙임 참조	선택(해당시)
	⑭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선택(해당시)
	⑮ 2025년 미국 관세 납부 증빙서류 *관세피해 증빙	선택(해당시)
2) 사업계획서 (hwp(한글) 파일)	①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3) 신청기업정보 (엑셀 파일)	[서식6]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신청기업 정보	필수

-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미제출로 간주함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본 사업 신청 및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타 기관의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기개발·판매 중인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및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신청자격 미충족 등 부적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참여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추가 사업화 지원(전문가 컨설팅, 해외 온라인 플랫폼) 세부 내용은 과제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담당/문의: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조은별 과장

Tel) 031-8064-1089 / Mail) jeb@gsmba.kr / Homepage) www.gsmba.kr

【붙임1】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 선정평가 기준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선정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요건 검토	자격요건 충족여부	1)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적정성 2)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3) 지원제외기업 대상 적/부 확인	
	사업참여 제한여부	경기도 사업참여 제한여부(적/부)	
	법위반사실여부	법위반사실여부 조회·검토, 해당시 총점의 20% 감점 적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1. 재무건전성 (15)	1.1.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5	100%미만(5), 100%이상~200%미만(3), 200%이상~30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	100%이상(5), 50%이상~100%미만(3), 0%이상~5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3. 매출액영업이익율 : 영업이익/매출액*100	5	10%이상(5), 5%이상~10%미만(3), 2%이상~5%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2. 기업경쟁력 (15)	2. 기업경쟁력 종합 : 추진조직 체계, 매출신장 가능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15	1) 수행조직 구성 적정성, 참여계획 타당성, 추진의지 등 2) 대내·외 시장규모, 매출시장크기, 사업화 전망 등 3) 마케팅 등 유사사업 수행이력 등
3. 사업계획 적정성 (40)	3.1. 디자인 개발 필요성	15	자사제품 사전분석 및 준비성, 디자인 개선·개발 필요 여부 등
	3.2. 디자인 개발계획 적정성	10	개발계획 적정성, 추진방법 체계성, 의뢰기업 선정 적정성 등
	3.3. 디자인 개발과제 예산 적정성	15	사업비 예산편성 적정성 등
4. 기대효과 (30)	4.1. 사회적 기대효과	10	일자리 창출효과, 사회적 효과 우수성 등
	4.2. 경제적 기대효과	10	매출·수출 목표설정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4.3. 디자인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10	디자인 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적정성
합 계		100	
평가가점 (10)	기업인증	5	* [붙임2] 가점사항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사업 미수혜 기업(최근3년)	5	* 2023년~2025년 미수혜 기업(신규기업) 5점 부여
총 계		110	

【붙임2】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 선정평가 가점 및 우대사항

구분	가점 사항	확인	가점
1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 약정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서	1점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점
3	ISO GMP 또는 식약처 GMP(CGMP) 인증 획득 기업	화장품GMP 인증서	1점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5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서	1점
6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점
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1점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1점
9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10조 및 제11조 2항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1점
10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1점
1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4점
12	최근 3년(2023~2025)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미수혜 기업	없음 (운영기관 확인)	5점
13	미국 관세 피해기업	2025년 미국 관세 납부 증빙서류	없음 (우대적용)

* 신청일 기준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가점 및 우대사항은 적용되지 않음